2020년 제1차 성장지원편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2020년 제1차 성장지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개요

| 항 | 목 | 세부내용 | | | | | |
|--|----------|------|--|-----------|-------------|----------|----------------|
| 정채결 | 출자자 | 0 7 | 정책출자자 위 | 탁운용금액 : 충 | 총 8,800억원 이 | 내 | |
| · 기계 | | | | | | (단위: 억원) | |
| - | · ·운용 | ţ | 한국산업은행 | 성장사다리펀드 | 산은캐피탈 | 정부 재정 | 합 계 |
| | | | 6,100 | 1,200 | 1,000 | 500 | 8,800 |
| 금 | 액 | * = | * 출자자별 위탁운용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위탁운용사 선정 이후 출자자별 승인 절차 진행함 | | | | |
| | | Ο τ | 리그별 출자계 | 획 | | | (-1 4) 1 41 41 |

(단위: 개, 억원)

| 리그 | | 정책출자자 출자총액 | 선정 운 용 사수 | 정책출자자 출자비율 | 펀드별 제안규모 | 조성규모 |
|------------|-----------|---------------|-------------------------|---------------|-------------|--------|
| 중 | <u></u> 견 | 2,700 | 2~3 | 30% | 3,000~5,000 | 9,000 |
| 스케일업 | 대형VC | 1,600 | 2 | 40% | 2,000 | 4,000 |
| _ 성장 | 일반 | 2,200 | 3~5 | 37% 이내 | 1,200~2,500 | 6,000 |
| 스케일업 혁신 | | 1,820 | 6 | 38% 이내 | 800 | 4,800 |
| 루 키 | | 480 | 4 | 40% | 300 | 1,200 |
| <u>합</u> 계 | | 8,800 | 17~20 | | | 25,000 |

- * 중견 리그는 500억원 단위, 스케일업 성장(일반) 리그는 100억원 단위로 제안 요망
- 리그별 주관기관 : 한국산업은행(중견·스케일업성장·루키), 한국성장금융(스케일업 혁신)
- 소정의 심사결과 및 정책출자자 위탁운용금액에 따라 리그별 정책출자자 출자금액, 비율 및 선정 운용사 수가 변경될 수 있음

운용사 수 및

배정금액

선정

- 중견, 스케일업 성장(일반) 리그는 펀드별 제안규모를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 제안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책출자 금액 및 운용사 선정 수는 변동가능
 - 상위평점 순 운용사 제안규모의 합이 리그별 조성규모를 초과하는 수준 까지 선정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선정 운용사 동일비율로 조정 예정
 - 이 경우, 최종 조정된 규모를 최소결성금액으로 하고 정책출자자는 동 금액에 대하여 제시된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금액 확정 예정(별침 참고)
 - * 스케일업 성장(대형VC), 스케일업 혁신, 루키리그는 상기 제안규모를 최소결성금액으로 함
- 민간출자자 모집의 과도한 경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종결성은 제안규모의 200% 이내로 제한하되, 부득이한 경우 정책출자자 협의로 조정 가능
- 운용사가 리그 및 투자기구를 자율 선택하여 지원(리그별 중복 신청 불가)
- 스케일업 성장(대형VC) 리그는 2,000억원 규모 2개사를 우선 선정예정이며, 미선정된 운용사의 경우 스케일업 성장(일반) 리그 지원운용사와 동일 조건에서 재심사함

| 항 목 | 세부내용 |
|---------------|--|
| 출자대상 투자기구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 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용사는 관련 법규의 신설·변경 등의 사유로 투자 기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운용 자격을 갖추고 있고 본건 펀드의 운용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결성 전까지 변경 가능 |
| 운 용 사 선정방법 | ○ 홈페이지* 공개모집 공고 등을 통해 리그별 주관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 - 운용사, 운용인력,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한국산업은행: www.kdb.co.kr, 한국성장금융: www.kgrowth.or.kr |
| 접수일시 | 2020년 3월 3일(화) (10:00~16:00 限) |
| 심사결과 발 표 | 2020년 4월말 [*] * 최종 선정은 정책출자자 내부 승인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확정됨 |
| 편 드 결성시한 | 2020년 10월 30일(금)* * 정책출자자 협의하에 6개월이내 연장가능 |
| 운 용 사 신청자격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출자대상 투자기구」의 관련 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하도록 국내에 설립된 법인 제안운용사가 외국법인일 경우, 국내법 적용 등의 제한이 없도록 제안서 접수일 이전까지 국내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함(사전 협의 요망) 리그별 주관기관의 기존 위탁운용사(주축출자 및 일괄공모만 해당)는 제안서 접수일 현재 투자집행금액 기준으로 주관기관 위탁운용 펀드 약정총액의 60% 미만을 소진한 경우 제안을 제한함* * 단,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운용사가 기존 펀드 운용인력과는 별도의 인력으로 제안하는 등 주관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제안 가능 제안 운용사에서 운용중인 기존 펀드 정관(규약)에 유사한 목적을 가지거나 경합 소지가 있는 펀드 설립을 금지하는 경우 지원 리그별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 요망 제안 운용사가 유한회사이고 동사의 출자자들이 유한회사 형태로 기존 펀드를 운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기존 펀드 운용사와 제안 운용사의 최대 출자자가 동일하거나 기존 펀드 운용사에 참여한 개인 출자자중 2/3 이상이 제안 운용사의 출자자로 참여하면, 기존펀드 운용 실적을 본건 제안 운용사 실적으로 인정하여 평가 단, 신설되는 유한회사가 제안 운용사로 참여할 경우, 법인 설립은 접수일자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2개 이상의 운용사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각각 신청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 항 목 | 세부내용 |
|----------------------------|---|
| 민간제안 부문 지원요건 및 선정 | 민간제안 부문 : 리그별 최소결성금액 기준 30% 이상의 민간출자자 LOC*를 확보한 운용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리그별로 우선 선정 리그별 선정 : 중견, 스케일업성장(일반), 스케일업혁신, 루키 각 1개사 민간제안 부문에 미선정된 운용사는 해당 리그의 민간제안 미참여 제안사와 동일 조건에서 재심사함 * 스케일업 성장(대형VC) 리그 지원 운용사 중 30% 이상의 민간출자자 LOC를 확보한 경우, 1)스케일업 성장(대형VC) 리그 → 2)스케일업 성장(일반) 리그內 민간제안부문 → 3)스케일업 성장(일반) 리그 순으로 심사 예정 * 민간출자자 정의 「3.주요 출자조건, 민간출자자 인센티브」참고 * LOC 인정 범위: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GP 출자금과 출자확약서(LOC) 합산금액으로 하되, GP 출자금과 GP의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가 발급한 LOC 금액 합계는 최소결성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인정 ※ 본 제안내용은 민간자금 모집시 제안한 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민간출자자 LOC 확보 |
| | 과정에서 기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별도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 루키리그 신청자격 및 심 사 | ○ ①∼③에 모두 해당되는 운용사에 한해 루키리그 지원 가능 - 2개 이상의 운용사 공동 신청 시 각각 자격을 충족해야 함 ① 제안서 작성 기준일 현재 설립 후 5년 이내"의 법인 • 참투사 및 신기사: 소관부처 등록일자(등록증)~제안서 작성 기준일(해당 기구 제안 시) 기타: 운용사 설립일자(법인등기부등본)~제안서 작성 기준일 ② 블라인드 펀드 운용 규모"가 약정총액 기준 500억원 미만 • 제안서 작성 기준일 현재 제안사가 운용 중인 PE·VC펀드의 약정총액 합계 (프로젝트 펀드 제외) - PE펀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VC펀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기업 투자 목적의 투자신략, 역외 펀드 등 상기 PE·VC펀드 이외 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요망 • 제안 운용사가 'PE펀드 또는 VC펀드를 운용중인 기존 운용사(해외운용사 포함)의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인 경우 기준 운용사를 포함하여 펀드운용규모 및 업력을 산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협의 요망 • 펀드운용규모 산정시 공동운용(Co-GP) 펀드는 악정총액 전체금액을 사용(운용사수로 나누지 아니함) ③ 한국산업은행 또는 한국성장금융의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바 없는 운용사 • 주축출자 및 일괄공모만 해당 ○ 루키리그 제안 운용사는 상기 분류 기준에 의거 해당 여부를 확인(필요시 주관기관과 협의)하고, 제안서 접수 시 펀드운용규모 및 업력 관련 중빙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자료 제출시 금감원 공통업무자로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PEF) 현황' 및 벤처투자 정보센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전자공시시스템(DIVA)' 등 참조 ○ 루키리그 주관기관은 제안 운용사의 루키리그 해당 여부 확정한 이후 심사 진행 예정 ※ 루키리그 지원 대상 운용사임에도 불구하고, 타 리그(중견, 스케일업 성장, 스케일업 혁신 리그) 지원 가능 |

2. 출자분야

□ 주목적 투자 분야 설정 : 운용사 자율제안

- 운용사가 펀드 운용 전략, 성장지원펀드 조성 목적(아래 주요 투자분야 예시 참고*) 등을 감안하여 펀드별 주목적 투자분야 자율제안
 - * 1) 설립 초기 단계(창업 후 3년)를 지난 중소(벤처)·중견기업의 성장자금 공급 : Growth Capital, M&A, Buy R&D 등
 - 2) 회수 단계 투자: 중소기업 Buy-out, 기존 펀드 투자자산 인수(세컨더리) 등
 - 3)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투자: 혁신성장 공동기준 해당 산업 영위 기업 등
 - 4) 혁신 인프라 Data·Network(5G)·AI, 3대 신산업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관련 투자 등
 - ※ 국내 중소(벤처)·중견기업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취지를 감안하여,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등에 대해서는 비주목적 투자로 제한적 허용(펀드결성규모의 25% 이내) 예정(별첨참고)

□ 의무투자비율 설정 : 아래 범위 내 자율제안

- 펀드 주요 운용전략에 부합하는 주목적 투자 분야를 설정^{*}하여 리그별 최소 결성금액의 40% 이상 투자
 - * 주목적 투자분야의 상세 요건은 선정 후 개별 협의하여 정관(규약)에 반영
-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리그별 최소결성금액의 50% 이상 투자
 - * 대기업의 중소·중견기업 협업 프로젝트 및 펀드의 투자를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기업에서 분리되는 중소·중견기업 포함

□ 기타

- 민간제안 부문에 지원하는 운용사가 기존 출자자 앞 제안 내용 및 출자 확약 조건을 감안하여 금번 제안한 펀드 운용 전략이 성장지원펀드의 조성 목적에 부합할 경우, 주목적 투자 분야 및 의무투자비율 설정 예외 적용*
 - * 선정 시 펀드 결성 과정에서 주목적 투자분야 및 의무투자비율 별도 협의

3. 주요 출자조건

| 항 목 | 세부내용 | | | | |
|---|---|--|--|--|--|
| ○ 약정총액의 1% 이상* * 공동 운용의 경우 위탁운용사는 각각 약정총액의 의무출자비율 이상 출자하여야 하 운용사 계열사의 출자금액은 의무출자비율 산정에서 제외함 * 펀드 최소결성금액의 하향조정이 있는 경우라도 조정 전 최소결성금액(자율제안 한 리그의 경우 제안규모 기준)의 의무 출자금액 이상 출자해야 함 * LLC의 경우 운용인력 출자금액은 운용사 출자금액으로 인정 ※ 운용사 우선손실충당 설정 의무 없음 | | | | | |
| 존속기간 | ○ 펀드 결성일로부터 10년 이내 | | | | |
| 투자기간 | ○ 펀드 결성일로부터 5년 이내 | | | | |
| 납입방식 | ○ 수시납 또는 분할납 | | | | |
| 민간출자자 인센티브 | | | | | |
| | - 후순위 부담 금액은 정부 재정(후순위 출자자)을 재원으로 함 - 구 분 | | | | |
| | 학문 학문 학문 학문 발반 보기를 다 되는 부분 기를 다 되는 1.9% 3.3% 3.6% 4.0% 5.5% | | | | |
| | 후순위 부담 한도** 1.3% 40억원 2.3% 20억원 10억원 | | | | |
| | * 후순위 부담비율은 리그별 정부 재정의 민간출자자 출자약정금액 대비 비율 ** 후순위 부담한도는 리그별 정부 재정의 펀드별 최소결성금액 대비 비율 다만, 자율제안을 실시하는 리그의 경우, 조정된 최소결성금액에 상기 비율이 적용되므로 최종 후순위 부담 금액은 변동 가능 - 단, 펀드수익률이 (성과보수 지급 기준수익률+2%p)를 초과할 시에는 후순위 출자자가 후순위 보강 대상 민간출자자 앞 초과수익의 10%를 우선 배분받는 구조로 제안해야 함* * 우선배분 한도: 펀드별 후순위 부담금액 | | | | |

핤 목 세부내용 ○ 관리보수 : 펀드 최종 결성금액 기준 구간별 누적적 적용 구 분 ≤500 \leq 1,000 \leq 2,000 2,000< 결성일~2년(약정총액기준) 2.3% 이내 1.8% 이내 1.2% 이내 0.5% 이내 2년~만기(투자잔액기준) ○ 성과보수 : ①, ② 중 택일(②안 선택시 관리보수율 하향조정 필수, 사전협의요) 관리보수 기준수익률(IRR) 구간 7~15% 15% ~ 구간별 성과보수율 초과수익의 20% 초과수익의 30% 및 성과보수 ② 기준수익률(IRR) 8% 초과수익의 20%, Catch-up 40% 이내 ○ 상기 보수 체계를 기본으로 성과 중심으로 관리·성과보수를 연계 구 성하여 자율제안 가능(사전 협의 요망) ○ 민간제안 부문 지원 운용사는 민간출자자 앞 기제안된 보수체계 및 보수율이 있을 경우 해당 구조로 제안 가능(사전 협의 요망) ※ 펀드별 보수 체계는 선정 시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 ○ 운용사는 보통주 투자실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센티브(①)를 부여받음, ① 신주 보통주 투자 실적(기본) - 중소·벤처기업 신주 보통주 투자실적(보통주투자금액 합계/총 투자금액) 신주 보통주 투자 비율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인센티브 지급 비율 3% 7% 10% ○ 제안사는 ①과 별도로 아래 ②~③ 중 하나를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 요건 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하기 실적 충족 시 정책출자자 앞 배분될 초과 수익 중 10% 이내 금액을 운용사 앞 인센티브로 지급 가능 ② M&A 회수 실적 - 펀드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투자한 기업을 매각하여 인수자가 경영권을 운용사 확보*한 투자 실적(M&A 매각 건의 투자원금 합계/총 투자금액) 추가 인센티브 * SI 없이 펀드 또는 펀드 컨소시엄 앞 경영권을 매각하는 경우 실적 집계에서 제외 M&A 회수 비율 20% 이상 30% 이상 50% 이상 인센티브 지급 비율 2% 5% 10% ③ 후속투자(Follow-on) 실적 - 초기투자* 이후 후속투자**실적(후속투자금액 합계/총 투자금액) *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투자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단. 직전 3년내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초과한 적이 없을 것)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펀드(한국산업은행, 성장금융, 모태펀드 출자펀드)의 신주 투자 ** 정책펀드 투자 후 4년 이내 신주로 Follow-on 투자(동일 펀드내 후속투자 인정) 후속투자 비율 20% 이상 40% 이상 50% 이상

3%

7%

10%

인센티브 지급 비율

| · 항 목 | 세부내용 |
|---------------------------|---|
| 항 목 핵 심 운용인력 | < 공통 사항 > ○ 핵심운용인력 총 3인 이상 참여 - 제안펀드 규모 및 운용 전략, 운용인력의 경력, 역량 및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원으로 제안 ○ 자격 요건 - 핵심운용인력은 리그별로 일정 기준 이상의 투자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핵심운용인력 관련 세부 사항은 리그별 제안서 엑셀 서식 '작성요령' 참조 ○ 핵심운용인력(대표펀드메니저 포함)이 투자기간 중 본건 펀드를 포함하여 핵심운용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펀드는 4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고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한 펀드는 미포함 ○ 펀드 결성 시 핵심운용인력은 정관(규약)에 기재 ○ 공동 운용의 경우 위탁운용사별로 각각 핵심운용인력 2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함 < 중견·스케일업 성장·루키 리그 > ○ 핵심운용인력 중 대표펀드매니저 1인 지정 |
| | - 공동 운용의 경우 운용사 당 대표펀드매니저 1인 지정 ○ 대표펀드매니저는 투자기간 만료 또는 약정총액의 60% 이상이 투자되기 전에는 다른 블라인드 펀드의 대표펀드매니저 겸임(신규 또는 변경선임)을 제한 ○ 제안사는 선정 심사 시 主 평가대상이 되는 핵심운용인력 3인(대표펀드매니저 1인, 핵심운용인력 2인)을 지정*하여 제안서 제출 - 공동 운용의 경우 운용사 당 2인(대표펀드매니저 1인, 핵심운용인력 1인)을 지정 * 대표펀드매니저와 핵심운용인력의 평가 가중치가 차등 적용됨 |
| 출 자 자 제 한 | ○ 출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법인으로 제한 원칙 - 단, 개인출자자(운용인력, 특수관계인 등) 및 기타 출자자가 책임 운용 강화 등 펀드 운용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 ○ 해외출자자(해외출자자의 국내법인 포함)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 |
| 수탁회사 | ○ 리그별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Pool에서 선정 ○ 펀드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의 확정금리부 금융상품에 운용 가능 ○ 펀드자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
| 회계감사인 | ○ 리그별 주관기관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 선정 |
| 편 드 전자보고 시스템 | ○ 펀드 전자보고 시스템 사용 의무 ○ 펀드운용 등에 대하여 펀드별 출자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 ○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 |
| 공정가치 평가 | ○ 운용사는 펀드 투자자산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공정가치평가 의뢰 및 동 결과를 반영한 '지분법(연결)' 패키지를 한국산업은행 앞 제출 (정관(규약) 반영사항, 스케일업 혁신 리그 제외) |

| 항 목 | 세부내용 |
|----------------|---|
| 유사목적펀드 설립제한 | ○ 운용사는 약정총액의 60% 이상이 투자되기 전에는 유사목적 및 경합 소지가 있는 펀드 설립을 할 수 없음(스케일업 혁신 리그, 공동투자·병행 펀드 제외) * 정관(규약) 반영사항임 |
| | ○ 운용사는 투자기구를 자율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나, 스케일업 성장(대형VC) 리그는 VC 펀드* 제안만 허용 *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 본 공고에 의해 운용사가 제안한 출자조건(출자금액, 보수, 인센티브 등)의 적용 여부는 선정 후 최종 결정 예정임 |
| | ○ 선정 후 결성과정에서 출자조건(주목적투자분야·비율, 보수구조 등) 등에 대한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펀드 조성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자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 가능 |
| | ○ 운용사는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병행펀드(Parallel 펀드) 구조로 제안 가능하며, 이 경우 병행펀드와 본건 제안펀드를 합산하여 정책출자자 출자비율을 산정함 - 단, 세부 운용조건은 병행펀드와 동일하거나 유리한 조건이어야 함 |
| | - 인, 세우 문중소신는 정행원으와 중할아기다 유디안 소신이이야 함 - 병행펀드의 결성일은 제안펀드의 결성일보다 늦을 수 없음 * 선정 후 결성과정에서 병행펀드 구조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 기 타 | ○ 한국모태펀드*의 혁신모험·중진 계정 등 출자사업에 공동 출자할 수 없음 - 단, 관련법 상 조합 결성 시 모태펀드 의무 출자를 요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타 계정 등의 경우에는 사전 협의 요망 * 기타 정책출자기관의 경우에도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 차원에서 사전 협의 요망 |
| | ○ 펀드 결성 완료시 리그별 주관기관의 기준정관(또는 규약)에 따른 약정 체결을 원칙으로 하나, 출자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 가능함 - 리그별 주관기관의 리스크관리 목적상 펀드 투자대상(편입가능 자산 유형) 및 차입 행위 등에 대한 정관(규약)상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 | ○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예정)시, 선정 평가에 반영 - 참여(예정) 운용사는 제안서 접수일 전일까지 코드 이행 조사기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등록을 완료해야 함 - 참여 예정 운용사가 본건 위탁운용사 선정 후 미참여 시, 관리보수 삭감 또는 향후 선정 평가 시 감점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 ○ 펀드 결성 후 운용 과정에서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혁신모험펀드 연계 대출 프로그램 주선 등 취급 실적을 확인할 예정으로, 연계 대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 요망 |
| | ○ 미합중국의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최종시행규정(Volcker Rule Implementing Regulations) 등을 준수해야 함 |
| | ○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모투자 일반 관행에 따르며, 결성 과정에서 리그별 주관기관과 개별 협의하여 결정함 |

4. 선정 우대 항목

- 운용사가 타 투자자(결성(예정)펀드, SI(전략적투자자), FI(재무적투자자) 등)와의 공동투자약정 등 확정된 계약을 통해 제안펀드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한 경우
- 운용사(계열회사 제외)가 최소출자비율을 초과하여 출자 제시한 경우
- 리그별 주관기관의 위탁 운용 편드 청산 수익률이 우수한 경우

5. 선정 배제, 취소 기준

□ 선정 배제

-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사유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바 있거나, 시정명령 이행 실적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
 - ※ 다만, 본 펀드 운용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내역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정 배제사유에서 제외 가능함
-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최근 2년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탁운용사로써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투자업체 발굴 및 투사의사결정 등 펀드 운용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 으로 위탁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 펀드의 핵심운용인력과 운용사 대표이사가 과거 5년 이내에 감독 당국 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의 진행,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 경영권 불안정,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책출자자가 출자한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등을 한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공고일 이후 위탁운용사 또는 제3자가 출자자의 선정 절차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선정 취소

- 펀드의 최소결성금액(조정된 경우 조정 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본 펀드의 출자조건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규약(정관)협의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 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제재 사항 및 기타

□ 제재 사항

- 결성시한(협의에 의한 연장기간 포함) 내 펀드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 운용사 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 또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할 수 있음
 - 다만, 관련 법규상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해 펀드결성이 지연될 경우 제재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함
- 선정된 펀드가 존속기간 중 규약(정관)상 투자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대해 1년 동안 출자 제한하며, 기지급된 관리보수를 환수 하거나 성과보수를 미지급할 수 있음
- 선정된 운용사가 출자확약서 등의 제출에 따라 우대를 받았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5년간 출자 제한되고, 실제

출자금액이 당초 제출한 출자확약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할 수 있음

○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

□기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 특히,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투자실적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허위,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누락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정 이후 에도 선정을 취소하며 확인일로부터 5년간 출자 제한함
- 접수일시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접수 후 리그별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은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기준일은 **2020.1.31(금)**로 하며, 핵심운용인력 등의 참여 인력은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함

7. 선정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bigcirc 공고 \rightarrow 제안서 접수 \rightarrow 서류심사 \rightarrow 현장실사 \rightarrow 구술심사 \rightarrow 최종 선정

□ 선정 일정

| 일 자 | 내 용 | 비고 | | |
|------------|----------------|------------------|--|--|
| 2020. 3. 3 | 제안서 접수 | 10:00~16:00 | | |
| 2020. 4월말 | 최종 선정 | 개별 통지 | | |
| 2020. 5월중 | 출자확약서 발급 | 출자자 내부 승인절차 완료 후 | | |
| 2020. 10월말 | 펀드 결성 완료 | 2020. 10. 31 限 | | |

^{*}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지원방법

□ 지원방법

- 리그별 주관기관이 정하는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시한 내 제출
 - * 제출서류 및 관련양식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구술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는 별도 PT자료(12부)를 제출
 - 분량 : 본문 기준 20페이지 이내 (발표 당일 PT자료, 파일 별도 지참)
-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출자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을 계획이오니,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유선, 개별 방문 협의 요망

9. 접수처 및 문의방법

□ 접수 및 문의처

| 구 분 | 중견, 스케일업 성장, 루키리그 | 스케일업 혁신 리그 |
|--------|--|---------------------------------|
| 주관기관 | 한국산업은행 간접투자금융실 | 한국성장금융 출자사업팀 |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 한국산업은행 본점 1층 스타트업 IR센터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한국거래소 별관 4층 |
| 전화번호 | 02-787-0680, 0681 | 02-2090-9104, 9113 |
| E-Mail | kdbindirect@kdb.co.kr | mk.lee@kgrowth.or.kr |

2020년 2월 7일

한 국 산 업 은 행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산 은 캐 피 탈

별첨

펀드규모 자율제안 예시 및 주요 변동사항

- 1. 펀드규모 자율제안 참고
 - □ 선정 운용사의 제안규모 합이 조성규모 초과할 경우, 정책출자액 배분
 - (예시1) 중견리그 A사 5천억, B사 3천억, C사 3천억 선정시

| 선정 운용사 | 조성규모/ | 조정 후 | 정책 | 정책 |
|-----------------------|--------------|------------------|--------|-------------------|
| 제 안규모 | 제안규모 | 최소결성규모 | 출자비율 | 배분액 |
| 1순위 A사 5,000억 | | A사 4,090억 | | A사 1,227억 |
| 2순위 B사 3,000억 | 9,000/11,000 | B사 2,455억 | 20.00/ | B사 736.5억 |
| <u> 3순위 C사 3,000억</u> | (81.8%) | <u>C사 2,455억</u> | 30.0% | <u> C사 736.5억</u> |
| 합계 11,000억 | | 합계 9,000억 | | 합계 2,700억 |

- * 2순위까지 조성규모인 9,000억원에 미달하는 바, 3순위까지 선정
- (예시2) 중견리그 A사 5천억, B사 5천억 선정시

| 선정 운용사 | 조성규모/ | 조정 후 | 정책 | 정책 |
|---------------|--------------|-----------|-------|------------------|
| 제 안규모 | 제 안규모 | 최소결성규모 | 출자비율 | 배분액 |
| 1순위 A사 5,000억 | 0.000/10.000 | A사 4,500억 | | A사 1,350억 |
| 2순위 B사 5,000억 | 9,000/10,000 | B사 4,500억 | 30.0% | <u>B사 1,350억</u> |
| 합계 10,000억 | (90.0%) | 합계 9,000억 | | 합계 2,700억 |

○ (예시3) 스케일업 성장리그 대형VC 운용사 2개 선정 후, 일반 a사 1.5천억, b사 2천억, c사 1.2천억, d사 2.5천억 선정시

| 선정 운용사 | 조성규모/ | 조정 후 | 정책 | 정책 |
|----------------------|-------------------------|------------------|-------|----------------|
| 제안규모 | 제안규모 | 최소결성규모 | 출자비율 | 배분액 |
| 1순위 a사 1,500억 | | a사 1,250억 | | a사 458억 |
| 2순위 b사 2,000억 | 6,000/7,200 (83.33%) | b사 1,667억 | | b사 611억 |
| 3순위 c사 1,200억 | | c사 1,000억 | 36.7% | c사 367억 |
| <u>4순위 d사 2,500억</u> | (00.5070) | <u>d사 2,083억</u> | | <u>d사 764억</u> |
| 합계 7,200억 | | 합계 6,000억 | | 합계 2,200억 |

- * 대형VC 2개사 우선 선정으로 4,000억원 조성규모 달성, 잔여 조성규모 6,000억원 대상으로 상위평점 제안규모 합산
- (예시4) 스케일업 성장리그 대형VC 운용사 1개 선정 후, 일반 a사 2.5천억, b사 2천억, c사 1.2천억, d사 1.5천억, e사 1.2천억 선정시

| 선정 운용사 | 조성규모/ | 조정 후 | 정책 | 정책 |
|--|-------------------------|--|-------|--|
| 제안규모 | 제 안규모 | 최소결성규모 | 출자비율 | 배분액 |
| 1순위 a사 2,500억 2순위 b사 2,000억 3순위 c사 1,200억 4순위 d사 1,500억 5순위 e사 1,200억 합계 8,400억 | 8,000/8,400 (95.24%) | a사 2,381억 b사 1,905억 c사 1,143억 d사 1,428억 <u>e사 1,143억</u> 합계 8,000억 | 37.5% | a사 893억 b사 714억 c사 429억 d사 535억 e사 429억 합계 3,000억 |

□ 선정 운용사의 제안규모 합이 조성규모와 일치할 경우, 정책출자액 배분

○ (예시5) 중견리그 A사 4천억, B사 5천억 선정시 정책출자액 배분

| 선정 운용사 | 조성규모/ | 조정 후 | 정책 | 정 책 |
|---|-------------------------|---|-------|---|
| 제안규모 | 제 안규모 | 최소결성규모 | 출자비율 | 배 분 액 |
| 1순위 A사 4,000억 <u>2순위 B사 5,000억</u> 합계 9,000억 | 9,000/9,000 (100.0%) | A사 4,000억 <u>B사 5,000억</u> 합계 9,000억 | 30.0% | A사 1,200억 <u>B사 1,500억</u> 합계 2,700억 |

○ (예시6) 스케일업 성장리그 대형VC 운용사 미선정 후, 일반 a사 2.5천억, b사 2천억, c사 1.5천억, d사 2천억, e사 2천억 선정시 정책출자액 배분

| 선정 운용사 | 조성규모/ | 조정 후 | 정책 | 정책 |
|---|---------------------------|--|-------|--|
| 제안규모 | 제안규모 | 최소결성규모 | 출자비율 | 배 분액 |
| 1순위 a사 2,500억 2순위 b사 2,000억 3순위 c사 1,500억 4순위 d사 2,000억 <u>5순위 e사 2,000억</u> 합계 10,000억 | 10,000/10,000 (100.0%) | a사 2,500억 b사 2,000억 c사 1,500억 d사 2,000억 <u>e사 2,000억</u> 합계10,000억 | 38.0% | a사 950억 b사 760억 c사 570억 d사 760억 <u>e사 760억</u> 합계 3,800억 |

^{*} 대형VC 미선정으로 조성규모 10.000억원 대상으로 상위평점 제안규모 합산

2. '20년 주요 변동사항

- 중견, 스케일업 성장(일반) 리그에 펀드별 제안규모를 일정 범위 내 자율제안 도입
- 민간제안 부문 LOC 사전확보 요건 30%로 완화
- 해외투자*는 비주목적 투자로 제한적 허용 예정

* 해외투자 예시

- ① 국내기업이 설립하였거나 설립예정인 해외현지법인
- ② 국내기업이 해외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하였거나 설립예정인 합작법인
- ③ 제안펀드가 국내기업(SI)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해외기업
- ④ 해외M&A를 했거나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
- ⑤ 상기 예시 이외에 국내사업과 연계 목적의 해외투자 등
- ※ 허용비율, 투자분야 등 세부 사항은 정관·규약 협의 과정에서 확정

○ 보수구조

- 관리보수 : 펀드 결성금액 내 구간별 관리보수율 적용
- 성과보수 : 기존 보수체계에 추가하여 40% 이내에서 Catch-up 선택 옵션 부여
- 운용사 인센티브
 - 중소·벤처기업 신주 보통주 투자실적 비율 완화 및 인센티브 기본 부여